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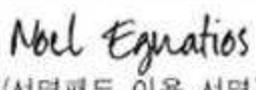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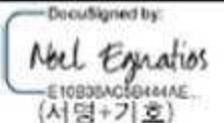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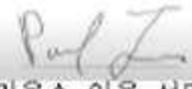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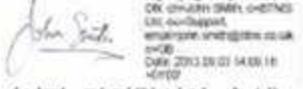
특허청 전자서명된 증명서류 업무 처리 기준 안내

한국 특허청은 COVID-19 상황 하에서 대면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재외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서명된 위임장 또는 전자 (원격) 공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특허청이 발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처리 기준

(1) 전자서명된 서류의 전자서명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서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서명패드 이용 서명)	 (서명+기호)	 (서명+디지털서명 속성)
 (마우스 이용 서명)	 (서명(이미지))	 (서명+디지털서명 속성)

전자서명된 서류의 번역문 제출 시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서명한 서류임을 소명하는 확인(진술) 내용을 번역문에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 유효한 서류로 인정함

(2) 전자서명된 서류의 전자서명이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서명 형태가 아닌 문자, 기호(디지털 기호) 등으로 구성된 경우

특허법인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T (02) 2188 5454

F (02) 2188 5455

E ip@BKL.co.kr



상기 (1)에서 언급한 소명 내용과 함께, 전자문서 파일 내 유효서명임을 나타내는 속성정보(서명자 인증) 등을 복사(캡처)하여 번역문에 추가하여 제출할 경우에 유효한 서류로 인정함

전자서명에 의한 서류 제출은 한국 특허청에서 COVID-19로 인해 직접 대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아 제출 이후 심사과정을 통해 서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법인 태평양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빌딩 5층

T 02 2188 5454 F 02 2188 5455 ip@BKL.co.kr www.BKL.co.kr